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 선발 계획

① 추진 목적

- 고등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②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
 - 「여성 석·박사 육아지원 장학금」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여성 석·박사 육아지원	10	8,882	8	7,200	5	7,590	

- 「가계곤란 및 신체장애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학금」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가계곤란 등	7	6,174	7	6,300	3	4,560	

③ 선발 계획

■ 중복신청 제한

: 여성 석·박사 육아지원 장학금과 가계곤란 등 장학금 중 1개 장학금만 신청 가능

○ 「여성 석·박사 육아지원 장학금」

- 사업개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여성 석·박사과정 재학생에게 육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성평등교육에 기여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 내외

※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선발인원에 따라 1인당 지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춘천캠퍼스 정원 내 석·박사 여성 재학생

- 선발요건

1)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학점 6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은 성적 및 학점 이수 기준 미적용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는 가진 여성 재학생

- 신청방법: 대학원생이 학과를 통하여 공문으로 신청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본인 명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선발방법

1) 지원자 중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선발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초등학교 이하 육아 중인 자녀 수가 많은 순

【선발제외자】

- ▶ 휴학자, 초과학기자, 연구원과정생, 미등록자, 관련서류 미제출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허위로 판명된 자,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가계곤란자 및 신체장애,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학금」

- 사업개요: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학업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학생**을 지원하여 학업 지속을 돕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 내외

※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선발인원에 따라 1인당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춘천캠퍼스 정원 내 재학생

유 형	세 부 내 용
가계곤란	○ 최근 1년 이내 보호자의 실직/파산/사업체 부도/신용회복/개인회생/사망한 경우 ○ 가족(부, 모, 형제자매)이 6개월 이상 장기투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은 경우 ○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1~3급)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3인 이상(본인 포함)이면서 그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등)
신체장애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다문화 가정	○ 최근 1년 이내 본인이 이민한 경우나 부모가 귀화한 경우
새터민	○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탈출한 경우

- 선발요건

- 1)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재학 중인 정원 내 **춘천캠퍼스 일반대학원생**
- 2) 전 학기 **평점평균 점수가 3.0 이상인 자**

※¹ 석사신입생(1학기)의 경우 학부 전체 평점평균이 2.5 이상, 박사 신입생(1학기)의 경우 석사 전체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² 다문화, 새터민 가정의 신입생은 성적 기준을 미적용

【선발제외자】

- ▶ 휴학자, 초과학기자, 연구원과정생, 미등록자, 관련서류 미제출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허위로 판명된 자,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신청방법: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장의 확인 후 공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1) 공통(필수) 서류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서식 2) 1부

② 장학금 추천서(서식 3) 1부

③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박사 신입생은 석사과정 전체학기, 석사 신입생은 학부과정 전체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명의)

※ 부모 모두 사망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 및 신청인 각각의 소득증빙자료

- 사업자(자영업자 및 종합소득과세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_**2025년 귀속**
(온라인 경로) 홈택스>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소득금액증명

-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_**2025년 귀속**

- 무직자: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_**2025년 귀속**

(온라인 경로) 홈택스>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신고사실없음

※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 모 모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부, 모 중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나 기본증명서(사망 증명)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⑥ 부, 모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_**2025년 귀속**

-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 경로) 정부2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후 발급

- 건물, 토지 내용 필수포함

- 발급금액 없는 경우: **납세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부, 모 모두의 지방세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부, 모 중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증명)나 기본증명서(사망증명)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지방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자료를 제출

2) 유형별 증빙 자료(필수)

유 형	제출서류	비 고
①보호자 실직, 파산, 사업체 부도(폐업) ※ 제출서류 중 1개만 제출	■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4대보험 가입확인서 ■ 파산: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 ■ 사업체 부도(폐업): 휴·폐업 사실증명서	장학신청일 기준 발급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②보호자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 개인회생 결정문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신용회복 등 증빙서류	입학 이후 발급한 서류
③본인 및 가족(부, 모, 형제자매) 장기투병	■ 병원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진료비 납부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공적 서류(상병코드 명시) ※ 대상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진단서에 표시)	- 입학 이후 발급한 서류 - 6개월 이상의 투병 증빙
④자연재해	■ 재해 관련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 관공서 발급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⑤보호자(부, 모) 장애	■ 장애인 증명서(공통) ■ 장애인 경증일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발급)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⑥보호자 사망 등 ※ 제출서류 중 1개만 제출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진단서, 말소등(초)본	입학 이후 발급한 서류
⑦학생 본인 근로자	■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⑧기타 경제 곤란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필수) ■ 기타 불가피한 경제 곤란 사유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 ex)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⑨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⑩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⑪장애인 학생	■ 장애인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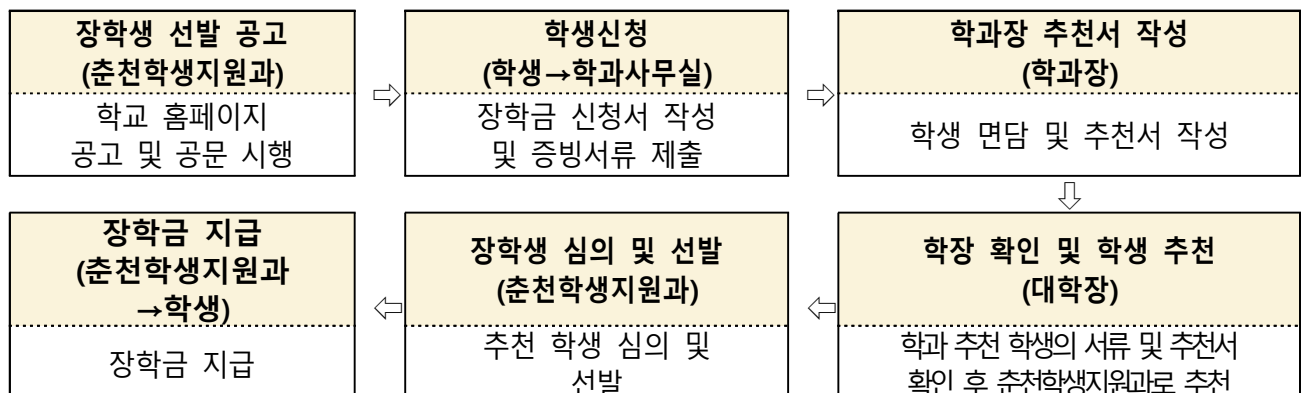
- 심사 기준 및 방법

1) 1차 심사(자격/서류 심사): 성적 확인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2) 2차 심사: 전체 학기 평점평균, 소득신고액, 과세신고액을 점수로 환산

※ 붙임2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심사

○ 선발 및 지급 절차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선발인원에 따라 1인당 지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항목	예산현황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	국립대학육성사업-장학금	10,632천원

○ 추진일정

- 장학생 선발 공고: 2026. 10. 13.(화)
-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작성(학생 → 학과): 2026. 10. 20.(화)까지
- 추천서 확인 공문 제출(단과대학 → 추천학생지원과): 2026. 10. 21.(수)
- 장학생 심의 및 선발: 2026. 11. 2.(월)
- 장학금 지급: 2026. 11. 20.(금)

붙임 1. 신청서 등 제출 서식 1부.
2. 환산 점수표 등 1부. 끝.

붙임1

신청서 등 제출 서식

【서식 1】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 신청서

[여성 석·박사 육아지원 장학금]

신 청 자	성 명		과 정		
	전 공		학 번		
부양자녀 (만 8세 이하)	자녀수	☐ 1명 ☐ 2명 ☐ 3명 ☐ 4명			
	부양자녀	성 명	생년월일	보육형태 비 고	
		1)			<보육형태, 택1>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보육 ④기타(부모님)
		2)			
		3)			
	4)				
장학금 지급계좌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핸드폰)	010- -				
연구계획	※ 현재,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및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정보 수집·이용 목적	신청서 작성 및 장학금 수혜 정보 조회·제공 등의 이용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공문서 보존기간 보유 및 이용(10년)				
상기인(신청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학습 소수자 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강원대학교 학생과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아니오(), 성 명: (서명)					
본인은 2026년도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서류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인) 강원대학교 춘천교학처장 귀하					

【서식 2】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 신청서

[가계곤란자 및 신체장애,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학금]

신청유형(V표시)	☐ 실직·파산·부도 ☐ 신용회복·개인회생 ☐ 장기투병(중증질환 등) ☐ 자연재해 ☐ 장애인(보호자) ☐ 사망(보호자) ☐ 학생(본인) 근로자 ☐ 학생(본인) 장애인 ☐ 기타 경제 곤란 ☐ 다문화 ☐ 새터민					
학과(전공)			과정		학번	
성 명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주소				연락처		
직전학기 취득학점	학점		학기전체 평점평균		/4.5	
학비조달방법 (V표시)	☐ 부 ☐ 모 ☐ 형제, 자매 ☐ 친척 ☐ 본인 ☐ 기타()					
정보 수집·이용 목적	신청서 작성 및 장학금 수혜 정보 조회·제공 등의 이용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공문서 보존기간 보유 및 이용(10년)					
상기인(신청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강원대학교 학생과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본인은 2026년도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서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자: (인) 추천자: (인) 확인자: (인) 강원대학교 춘천교학처장 귀하						

【서식 3】

일반대학원 학습소수자 장학금 추천서

[가계곤란자 및 신체장애,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학금]

소 속	과정		학과	전공
학 번			성 명	
학자금대출여부 (V표시)	있음() 없음()			
상담내용 및 추천의견	1. 신청자의 가계곤란도 평가: 신청자의 가정형편을 평가하여 표시			
	전혀 어렵지 않음	학비마련가능	학비일부가능	학비마련불가
	2. 경제사정으로 학업유지가 불가능한 사유, 가정환경			
	3.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4. 인성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 추천서는 1장 이내 작성				
2026년 10월 일 학과장: (인) 강원대학교 춘천교학처장 귀하				

붙임2
환산점수표 등

○ 환산점수표

심사부분	환산점수	심사점수	비 고
전체학기 평균평점	20점	4.0이상 : 20점 4.0미만 ~ 3.5이상 : 18점 3.5미만 ~ 3.0이상 : 16점 3.0미만 ~ 2.5이상 : 14점 2.5미만 ~ 2.0이상 : 12점 2.0미만 ~ 1.5이상 : 10점 1.5미만 ~ 1.0이상 : 8점 1.0미만 : 6점	
소득신고액	40점	250만미만 : 40점 250만이상 ~ 500만미만 : 36점 500만이상 ~ 750만미만 : 32점 750만이상 ~ 1,000만미만 : 28점 1,000만이상 ~ 1,250만미만 : 24점 1,250만이상 ~ 1,500만미만 : 20점 1,500만이상 ~ 1,750만미만 : 16점 1,750만이상 ~ 2,000만미만 : 12점 2,000만이상 ~ 2,250만미만 : 8점 2,250만이상 : 4점	전년도 부모 및 신청인의 소득신고 평균액
과세신고액	40점	0원 : 40점 1원이상 ~ 5만미만 : 36점 5만이상 ~ 10만미만 : 32점 10만이상 ~ 15만미만 : 28점 15만이상 ~ 20만미만 : 24점 20만이상 ~ 25만미만 : 20점 25만이상 ~ 30만미만 : 16점 30만이상 ~ 35만미만 : 12점 35만이상 ~ 40만미만 : 8점 40만이상 : 4점	전년도 부모 및 신청인의 과세신고 평균액

※¹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과세를 적용

※² 예산배정액 초과 시 선발 우선순위: ①환산점수 높은 자 → ②가계곤란 사유가 2건 이상인 자 → ③전체
학기 평점평균 높은 자 → ④전체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소득/자산 공통기준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	50%	60%	70%	80%	90%	10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출처: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 ※¹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²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³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등재 시 세대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유형별 선발대상

- 소득/자산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보호자의 실직 또는 파산, 사업체 부도로 인한 가계 곤란자
- 최근 1년 이내 보호자 신용회복, 개인회생, 면책의 진행 또는 그 결정으로 인한 가계 곤란자
- 가족(부·모·형제자매)의 6개월 이상 장기투병(중증질환, 희귀질환)으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자
- 최근 2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자
-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1급~3급)인 가계 곤란자
-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 곤란자
- 학생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이며, 그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가계 곤란자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충분한 근거(소득 및 재산 자료)가 입증 되는 자
-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자
- 최근 1년 이내 본인이 이민한 경우나 부모가 귀화한 자
-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탈출한 자